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향추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자립·자활과 재정 부담능력을 감안하고 자활사업촉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기금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여자금의 이자율 하향조정 : “연3%” 를 “연1%” 로 함
- 나.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연체이자율 : “연15%” 를 “연12%” 로 함
- 다. “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” 을 “기초생활담당사무관” 으로 함

3.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중 “대여자금의 이자는 연3%” 를 “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%” 로 하고, “연15%의 연체이자” 를 “연12%의 연체 이자” 로 한다.

제12조제2항중 “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” 을 “기초생활담당 사무관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	개
행	정 (안)
<p>제8조(자활공동체에 대한사업자 금대여)①~② (생략)</p> <p>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3%로 하되 상환기관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%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</p>	<p>제8조(자활공동체에 대한사업자 금대여)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1%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 연12%의 연체이자·····</p>
<p>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 용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</p>	<p>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 기초생활담당사무 관·····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18조(자활공동체) ①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(이하 “공동체”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제44조(보장기금의 적립)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제41조(보장기금의 설치) ①법 제44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

제44조(기금의 운용·관리 등)①기금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운용·관리한다.

②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